



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회신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관련 질의

〈질 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계약하여 1차 준공하였으나 뒤늦게 설계서보다 건설자재가 더 많이 투입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설계변경가능여부는 발주기관이 사전에 변경 시공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참고로,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공사대금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질의

<질 의>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에 있어서 공사대금 압류 및 추심권이 있을 때 공사가 준공된 후 몇 일 이내에 공사대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지
- 또한 공사대금을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없을 시 발주처에서 공사비 지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시설공사의 대금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법 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준공 후 몇 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귀 질의 경우 법원의 명령(압류, 추심명령)에 따라 공사대금을 집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등 의무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채무에 대하여 제3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송달한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최초로 도달한 압류권자에게 채권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사법상 판단이 필요하며, 채권은 개별적인 사항에 따라 변제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3. 설계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관련 질의

<질 의>

-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2항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에서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실적공사비에 의한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실적공사비에 의한 단가를 적용한다면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시에도 동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지, 또는 실적공사비에 의한 단가를 100%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제3항제1호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5조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에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는 가격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당시 산정한 방법과 동일하게 산정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당시 산정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란 계약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가격산정을 한 경우 설계변경 당시 가격산정도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복수예비가격 작성 착오에 관한 질의

<질 의>

입찰공고시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pm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고 공고하였으나 개찰시 조달청 전자입찰 프로그램(G2B)에서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되는 $\pm 2\%$ 를 적용하여 개찰을 완료한 경우 재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적격심사 등 계약절차를 지속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자부예규 제182호)」 2-2-1에 의하면,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 \sim +3\%$ 범위내에서 7개, $0\% \sim -3\%$ 범위내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입찰공고문에는 복수예비가격이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 범위내에서 작성함을 공고하였으나 $\pm 2\%$ 상당금액 범위로 작성된 경우도 인정된다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개찰한 경우와 서로 다른 개찰결과가 발생되므로써 낙찰자가 사실상 뒤바뀌는 중대한 하자일 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대다수 업체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착오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오류를 인정할 경우 착오를 빙자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한 복수예비가격 범위를 설정하는 등 입찰절차의 투명성을 해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착오 등에 의한 경우라 할지라도 복수예비가격의 범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입찰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관련규정 및 입찰공고내용을 준수하여 재공고 입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5. 시설공사 적격심사 적용범위에 관한 질의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공고한 시설공사에 있어서 당사가 적격심사대상 업체로 선정되어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현재 협회자료를 받으면 2006년도 정기결산서 자료가 제출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227호)」 〈별표 3〉의 II. 재무비율평가에 의한 경우 제3항에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자료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는 당해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별첨양식 6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 이라 한다)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6년도 정기결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에 있어서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에 의해 평가하므로 매년 1월부터 관련 협회 등의 업종평균비율이 발표되는 6·7월까지의 전전년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 관련협회가 없는 업종이나 관련협회에 신고 누락된 업체 또는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경영상태평가는 2005년도 정기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정산에 대한 질의

〈질 의〉

-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가 예정가격에 반영되어 계약체결된 공사에 있어 당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일부라도 보험을 가입하고 계상된 보험료 중 일부라도 납부한 경우 정산을 하여 감액을 할 수 있는지
- 만약 당해공사의 현장대리인만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만을 납부한 경우 보험료 계상대상이 아니라 하여 전액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예정가격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190호) 4-3-6-(10) 규정에 의거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는 예정가격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에 관계없이 동 법령이나 계약조건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의한 개산계약 및 동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이전 예정가격을 기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총액확정계약이 원칙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외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한바,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계상된 보험료보다 적다는 이유로 정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당해 사업장 단위로 가입하지 않고 본사 소속직원이 평상시에 가입이 의무화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라면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액 감액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7.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조정 관련 질의

〈질 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당해공사의 착공(2005. 8. 1)이후 매립작업의 대상물인 혼합폐기물이 당초 발주처에서 제공하기로 설계된 수량(월평균 68,760m³)과 다르게 적은 수량이 제공(월평균 29,884m³)됨으로서 폐기물매립공사의 공정계획 및 작업조건이 변경되어 계약상대자에게 입찰 및 계약체결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손실(유휴비용 및 직·간접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이 경우 실제 반입된 양을 기준으로 매립에 투입된 건설기계의 시간당 작업량을 재 산출한 단가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단가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장비가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서 건설기계의 경비(재료비, 인건비, 손료)를 보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시설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자부 예규 제195호)』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경우에 가능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동 조건 제26조에 의하여야 하나
- 귀 질의와 같이 발주처에서 당초 제공하기로 설계된 혼합폐기물량이 감소하였다는 사유로만으로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설계변경이 어렵다면, 물량 감소에 따라 현장 대기장비를 축소하는 등 계약조건 변경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하기 바랍니다.

8. 입찰공고관련 질의

〈질 의〉

입찰공고문에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공사를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의 평가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행정자치부 예규 제227호를 적용하여 추정가격 2억원 미만으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고문 내용처럼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 경우 입찰을 실시하여 개찰한 후 아직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으로서 당해 입찰이 관련법령에 의해 현저히 위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발주자가 최종결정할 사항입니다

9. 일반건설업체 하도급계약 관련 질의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시공중인 관급공사를 일반건설업체(토목공사업)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 규정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공사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작업시간 대기 관련 질의

<질 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갯벌 체험형 관광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강관파일 항타 단가산출시(해상공사) 장비대기 시간인 조석대기 시간의 인정여부
- 시공사에서 현지 해상의 조석차에 의한 작업시간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에 의거 계약금액 조정 요청(약 2억7천만원)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계약금액조정 사유에 해당되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나,
- 귀 질의 경우 예정가격결정시 일위대가표 또는 단가내역서상 조석대기시간에 대한 요율이 과다·과소 산정되었다는 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자부 예규 제195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1.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전처리시설 관련 질의

<질 의>

-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전처리시설을 당사에서 2000년 6월 14일 최초 계약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가 사업수행 중 계약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공단설립 등 발주처의 직영수행도 아닌 상황에서
- 발주공고 및 설명회, 위·수탁 계약서, 수탁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기간 조항 “위·수탁협약 체결 후 인계, 인수일로부터 3년간(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약기간 연장가능)으로 한다” 라는 근거로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을 수년간 장기적으로 체결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장기계속 계약이 아닌 단년도 계약의 경우에는 연장계약을 할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27호에 관한 질의

<질 의>

행정자치부예규 제227호(2007. 1. 12) 부칙에서 “2007년 3월 1일전에 입찰공고되는 공사의 경우 (별지5)(별지6)(별지7)의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평가는 지난 2005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3호)」의 (별지7)(별지8)(별지9)의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평가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별지8)의 1-2항 실적신인도 점수는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에 있어서 2007년 2월말까지 입찰공고된 공사는 행정자치부예규 제227호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5〉 내지 〈별지7〉의 시공경험평가 및 경영상태평가만 종전 행정자치부예규 제183호의 시공경험평가 및 경영상태평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행정자치부예규 제227호 〈별지6〉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 경쟁입찰공사 평가 기준(전기공사는 1.5억원미만)의 시공경험평가 및 경영상태평가는 종전 행정자치부예규 제183호 〈별지8〉의 경영상태평가(10점)만 적용하고, 실적신인도(+2점), 신인도(△1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지방계약법의 해당여부 관련 질의

〈질 의〉

- 용역발주 입찰에 3개사가 참여하였으나 그 중 2개사가 적격심사의 불리함을 전제로 2차 가격경쟁만 할 목적으로 응찰을 하지 않아 나머지 1개사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
 - 가. 2개사의 입찰포기로 입찰이 무효화 되었으므로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1차 유찰시 적격심사를 배제한 2차 가격경쟁 입찰로 갈 것이 아니라 1차의 입찰자체가 무효된 것이므로 재입찰을 시행하고, 또 불응시 재입찰을 시행해 3차까지 응찰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1호의 3회 이상 참가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입찰이 어느 회사가 유리한 것도 아닌데 2차 가격경쟁만 할 목적으로 2개사가 공동으로 입찰참여도 동시에 하지 않고 또 똑같이 입찰에 참여하여 똑같이 응찰을 하지 않아 입찰무효가 된 행위가 담합을 증명할 수는 없으나 고의성을 가지고 입찰을 무효화 시킨 행위는 분명하므로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9호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되어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용역의 경쟁입찰에 있어 담합 및 고의적 입찰미참가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및 제11호에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인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담합에 대한 판단여부는 2개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후 단순히 가격투찰을 하지 않았다 하여 담합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이며 담합이라는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담합사유가 되며 또한, 입찰에 3회이상 미참여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 승낙서를 제출한 후 당해입찰에 3회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미참여한 경우가 해당되며 귀 질의 경우 재입찰에 3회이상 불참한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4. 턴키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

〈질 의〉

-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2005년 7월 턴키방식으로 조달청에서 계약의뢰하여 장기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국지도 확포장공사와 연계를 위하여 A지역 IC 교차로 3지 입체 → 4지 입체방식으로, B지역 교차로 3지 평면 → 4지 입체방식으로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 소요사업비는 기존 도로의 구조변경과 신규 추가분을 포함하여 120억원 (추정치)입니다.
- 가. 우리청의 필요에 의해 기존 공사의 구조와 물량을 변경하고, 그 추가 공사비를 기준의 총괄사업비(1,500억원)에 포함하여 설계변경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나. 일괄·대안공사 계약 특수조건 등에 의거 턴키발주공사의 설계변경 증액이 불가능할 시, 기존 구조의 변경 등을 포함한 추가 공사비에 대하여 추가 발주로 간주하여, 현 시공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공사의 시공도중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당초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당초 발주된 국지도 확·포장공사 이외에 추가로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라면 추가발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4호 “가” 목 또는 “나”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추가되는 공사가 기 시공중인 국지도선 확·포장공사의 일부를 해체·변경하는 등으로 인하여, 전차공사와 하자 책임구분이 곤란한지 여부 또는 작업상 혼잡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자부 예규 제230호)』 혼잡도 평가기준에 의한 수의계약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점수를 산정해 보아야 할 사항이나, 도로포장, 도로개설공사 및 이와 유사한 토목공사는 하자구분곤란에 의한 수의계약 제외 대상공사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5. 육상트랙 보수공사 계약방법에 관한 질의

〈질 의〉

- 육상트랙 부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재공인을 관장하는 대한육상연맹의 트랙 보수공사 시 자재 선정문제로 질의한 바 트랙을 부분 보수할 경우 기존 재질과 동일한 자재로 보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기존자재(독일 BSW사 제품)를 선정하였고
- 본 부분 보수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주 공정인 상부재 재 도포에 사용될 기존 자재는 독일 BSW사 제품으로 국내업체와 독점대리점 계약 및 기술협약(설치, 유지보수, A/S를 위한 주요부품 및 제품 공급과 기술적 지식, 노-하우, 정보 등 제공)이 체결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4호 아목(당해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은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호 아목에 의한 수의계약은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은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바,
- 귀 질의 경우 다른 물품의 구매로는 사업목적은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사업목적 달성이 곤란한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6. 설계변경 관련 질의

〈질 의〉

- 지방자치단체와 하천 주변 주민 편익시설 재정비 공사를 계약하여 시공 중 가교 서리부분에 가교설치는 설계서상 계상되어 있고 철거(해체 및 반출)부분은 누락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독공무원과 설계변경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 가교를 철거하였음
- 그러나 발주처에서는 가교설치가 1식으로 되어 있어 설치 및 철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며 이미 기성금이 지불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는바,
- 가교설치 일위대가서 및 설계서(단가산출내역서)에서 가교 철거는 완전 누락되어 있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원가계산서·단가내역서상 단가·금액의 과다·과소 산정이나 품셈·일위대가표등의 변경은 동 조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7. 교육시설공사 설계변경 관련 질의

<질 의>

- 사회복지법인재단에 발주한 교육시설공사에 있어서
 - 가. 기존계약내용 항목과 설계도서 내용이 다른 경우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하는지 및 기존계약이 항목내용 수량이 잘못 적용(합판거푸집 사용횟수)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설계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나. 기존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에도 누락되어 추가로 공사할 경우(설계서에 누락된 공정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사회복지법인은 지방계약법령의 의무적 적용 대상기관이 아닙니다.

당해 사회복지법인이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지방계약법령상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1억이상의 공사 물량내역서 포함)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제195호, 2005. 12. 30)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그 밖에 추가공사 발생·특정공정 삭제·공정계획 변경·시공방법 변경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처에서 판단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귀 질의 경우 합판거푸집 사용횟수가 물량내역서에 포함된 경우라면 발주처에서 공사현장 등을 감안하여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18. 사업기간 지연에 관련 질의

<질 의>

- 당사는 화장로, 소각로 전문업체로서 2005.05.19. “천안시 추모공원 화장장 화장로 설치 사업”의 기술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된 후 2006.06.16.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이행보증금은 현금 165,500천원을 보증보험사에 예치하고 계약이행 증권을 발주처에 제출하였습니다.
- 당초 납품일자는 착공일로부터 12개월이었으나 민원에 따른 선형 건축공사의 착공지연으로 2009년이나 물품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주처에서 통보를 받은 경우 계약이행보증서 발행으로 보증보험사에 예치된 현금을 더 이상 예치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계약물품의 기본 및 실시 설계시 특허기술을 반영하여 설계납품 하였으므로 차후 착공시기에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특허에 의한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제조·구매 계약에 있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호 “사” 목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 귀 질의 경우 일정한 규격 및 내용을 제시하여 제조하게 하거나 다른 물품의 구매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구체적으로 대용품 또는 대체품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